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9. 18(월)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도 제2회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60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9. 5.
- 라. 회부일자 : 2023. 9. 5.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가.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2회추경 (안)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차추경	
계		818,763,965	734,968,659	710,356,657	21,882,868	2,729,134	83,795,306
일반회계		785,953,596	711,465,630	687,067,128	21,669,368	2,729,134	74,487,966
특별회계		32,810,369	23,503,029	23,289,529	213,500	0	9,307,340
	의료급여기금	682,598	590,000	590,000	-	-	92,598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591,400	591,400	591,400	-	-	-
	주차장	31,536,371	22,321,629	22,108,129	213,500	-	9,214,742

나. 일반회계

-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A+B)	기정액				2회추경(안) (B)	비고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차추경		
계	785,954	711,466	687,067	21,670	2,729	74,488	
자체재원	154,038	162,357	162,357	-	-	-8,319	
지방세	111,722	125,066	125,066	-	-	-13,344	
세외수입	42,316	37,291	37,291	-	-	5,025	
의존재원	481,436	480,894	456,495	21,670	2,729	542	
지방교부세	20,826	20,826	19,261	1,565	-	-	
조정교부금등	147,859	147,859	139,823	8,036	-	-	
보조금	312,751	312,209	297,411	12,069	2,729	542	
보전수입등	150,480	68,215	68,215	-	-	82,265	
순세계잉여금	127,619	68,215	68,215	-	-	59,404	
보조금사용잔액	20,701	-	-	-	-	20,701	
보조금등변환금	2,160	-	-	-	-	2,160	

-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A+B)	기정액				2회추경(안) (B)	비고	
		소계(A)	당초예산	간주처리	1차추경			
계	785,954	711,466	687,067	21,670	2,729	74,488		
일반회계	정책사업	623,150	578,570	554,138	21,651	2,781	44,580	
	재무활동	44,107	11,868	11,868	-	-	32,239	
	행정운영경비	118,697	121,028	121,061	19	-52	-2,331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2회추경(안)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261,051,325	100.00 %	230,523,178	100.00 %	30,528,147	13.24 %
민원감사담당관	249,755	0.03 %	262,004	0.04 %	△12,249	△4.68 %
소통담당관	3,726,091	0.46 %	3,808,650	0.52 %	△82,559	△2.17 %
행정안전국	152,238,874	18.59 %	150,721,372	20.51 %	1,517,502	1.01 %
행정지원과	110,666,556	13.52 %	109,886,759	14.95 %	779,797	0.71 %
자치행정과	11,637,887	1.42 %	11,339,673	1.54 %	298,214	2.63 %
교육지원과	25,187,385	3.08 %	24,684,112	3.36 %	503,273	2.04 %
주민안전과	4,021,787	0.49 %	4,043,779	0.55 %	△21,992	△0.54 %
민원여권과	725,259	0.09 %	767,049	0.10 %	△41,790	△5.45 %
기획경제국	84,610,491	10.33 %	56,689,919	7.71 %	27,920,572	49.25 %
기획예산과	57,404,599	7.01 %	32,740,042	4.45 %	24,664,557	75.33 %
지역경제과	16,750,157	2.05 %	14,920,695	2.03 %	1,829,462	12.26 %
일자리청년과	8,882,574	1.08 %	7,465,242	1.02 %	1,417,332	18.99 %
재무과	469,596	0.06 %	464,972	0.06 %	4,624	0.99 %
세무1과	472,128	0.06 %	467,531	0.06 %	4,597	0.98 %
세무2과	631,437	0.08 %	631,437	0.09 %	0	0.00 %
보건소	20,226,114	2.47 %	19,041,233	2.59 %	1,184,881	6.22 %
보건정책과	3,785,868	0.46 %	4,166,739	0.57 %	△380,871	△9.14 %
건강증진과	13,063,287	1.60 %	11,448,016	1.56 %	1,615,271	14.11 %
의약과	2,734,073	0.33 %	2,756,765	0.38 %	△22,692	△0.82 %
위생과	642,886	0.08 %	669,713	0.09 %	△26,827	△4.01 %

나. 행정안전국 주요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기정액	2차 추경(안)
1	행정지원과	청사경비 및 종합상황실 운영	- 남여 통합숙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보수 등 감액	278,321	420,843	-142,522
2	행정지원과	맞춤형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	-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민·형사)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사업 참여 - 202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수시등록 가입, 향후 1년 정기 등록	10,665	-	10,665
3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청사 관리	- 지하층 자원봉사팀 사무실 및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공간 재배치 - 교육장 별도 출입구 신설, 폴딩도어 설치 등 - 청사 전기요금 증액	2,966,411	2,760,351	206,060
4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 동 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 - 민원실 및 공유공간 필요물품 구매	1,042,727	727,677	315,050
5	자치행정과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 제공	62,409	52,419	9,990
6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	- 자치회관 공공요금 지원 및 필요물품 구매	1,606,905	1,445,690	161,215
7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활동 지원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105,220	95,220	10,000
8	자치행정과	동네방네 마을이음 센터 운영	- 위치 : 시흥대로12길 10-5 - 시설현황 • 1층 목욕탕·다목적실 • 2층 작은도서관·박미보건지소 • 3층 다목적체육관	385,181	355,181	30,000
9	자치행정과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	- 마을공간 조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268,320	243,014	25,306
10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동 지원	- 자원봉사자 교육장 운영비, 필요 가구 및 집기류 구매	158,602	130,618	27,984
11	자치행정과	금천1번가 운영	- 금천1번가 리빙랩 프로젝트 선정 1개 단체 중도포기로 감소조정	155,990	176,990	-21,000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기정액	2차 추경(안)
12	교육지원과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	- 1:1 맞춤형 입시상담, 학습심리상담 등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보수 감액	1,171,709	1,196,365	-24,656
13	교육지원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5·6호점 미설치	119,158	433,092	-313,934
14	교육지원과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 금천교육복지센터 이전 및 환경개선 공사 - 금천교육복지센터(현 어울샘 2층)를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공간(독산로 10길 24, 3층)으로 이전 - 공간 재배치(교육장 조성, 열람실을 회의실과 사무실로 분리)	50,000	-	50,000
15	주민안전과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 민방위대 조직편성, 자원관리, 민방위교육 및 소집훈련 실시	100,858	93,333	7,525
16	주민안전과	시설안전 점검	- 집중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시기별·계절별 안전점검 실시 시비확보로 감액	50,140	70,140	-20,000
17	주민안전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 감소정	393,971	453,971	-60,000
18	민원여권과	민원행정 지원	- 일반·등기 우편물 발송 감소에 따른 감소정	207,120	236,046	-28,926

5. 검토의견

-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20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정예산에서 총 15억 1,750만 2천원이 증액 되었음.
- 주요 편성 내역은
 - (행정지원과) 남여 통합숙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조정으로 1억 4,252만 2천원 감액,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1,066만 5천원 증액,

종합청사 지하1층 자원봉사자 전용 공간 조성비 및 구청사 전기요금 등 2억 606만원 증액

- (자치행정과) 동 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와 민원실 및 공유공간 필요물품 구매로 3억 1,505만원 증액,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999만원 증액,

시흥1동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시설 개선공사, 자치회관 노후장비 및 필요물품 구매, 자치회관 도시가스 및 수도요금 인상분 반영으로 1억 6,121만 5천원 증액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1,000만원 증액, 시흥3동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공공요금 인상비 3,000만원 증액, 동별 마을공간 노후 장비 교체, 필요물품 구매,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으로 2,530만 6천원 증액

자원봉사자 전용공간 조성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으로 2,798만 4천원 증액, 금천1번가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금액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 2,100만원 감액함.

- (교육지원과) 대입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변동으로 인건비 2,465만 6천원 감액, 교육부 학교내 돌봄확대 정책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5·6호점 미설치에 따른 설치예산 등 감액 3억 1,393만 4천원 감액, 금천교육복지센터 이전 및 환경개선공사비로 5,000만원 증액함.

- (주민안전과) 민방위복 교체에 따른 단가 인상 및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752만 5천원 증액, 집중안전점검 시비 보조금 지원 및 시설관리부서 자체 점검수수료 확보로 2,000

만원 감액, 신규 사회복지무요원 배치인원 감소로 인건비 6,000만원 감액함.

- (민원여권과) 일반·등기 우편물 발송 감소에 따른 우편요금 2,892만 6천원 감액함
- 행정안전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자원봉사센터 공간 재배치, 자치회관 필요물품 구매비 등의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이 요구된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에서는 매번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수시로 피드백하여 기록화하고 전파하고 개선하여 내실있고 효과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관계 법령 1부.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